

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 성 희 위원장님!
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서1 선거구 이 창섭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선배·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체육  
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  
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  
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 
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. 서울시 체육 활성화와 시민

여가생활 및 건강을 위해 기금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가 될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.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출석을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. 이를 통해 위원회의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장님!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-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은 역할과 규모의 측면에서 서울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원으로서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